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3. 3. 27(수), 14:00 ~

▣ 장 소 : 고궁박물관 회의실

발행권자

목 차

【심의사항】

1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천연기념물 지정	공개
2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3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공개
4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공개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건물신축 및 형질변경	공개
6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축도 설치	공개
7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수목 식재	공개
8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	공개
9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산림생태계 복원	공개
10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내 연안정비 호안설치	공개
11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주변 건축물 증축	공개
12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주변 소매점 신축	공개
13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주택 신축	공개
14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센터 증축	공개
15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주변 주택 증축	공개
16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주변 농로 개설	공개
17	「서울 백악산 일원」 내 사방사업	공개
18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주택신축-(1)	공개
19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주택신축-(2)	공개
20	「예천 초간정 원림」 주변 예천군 보건진료소 신축	공개

【검토사항】

21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지정구역 확대 조정	공개
22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지정구역 확대 조정 및 도면 정정	공개

【보고사항】

23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	------------------------	----

1.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천연기념물 지정

가. 제안사항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추진경과
 - 2011년 한국의 지질다양성 조사
 - '12. 5.2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의견 요청(문화재청→강원도)
 - '12. 7.2 우수자원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강원도→문화재청)
 - '13. 1.8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문화재위원 3인)
 - '13. 1.23 문화재위원회 지정검토
 - '13. 2.6~3.7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주요내용

- 문화재 명칭(안) :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1423천(35,927.5m²)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 지정가치
 -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하식기원 돌개구멍들이 화강암반 하상위에 폭넓게 발달되어 있어, 하천의 윤회와 유수에 의한 하식작용 등을 밝힐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크며
 - 여러개의 돌개구멍이 복합적으로 발달된 지형자체가 가지는 경관적 가치도 우수함
- 문화재관리단체 : 영월군(영월군수)
- 문화재구역 : 1필지 / 35,927.50m²

라. 문화재 현황

- 조사지에는 약 200m에 걸친 하상에 쥐라기 흑운모화강암을 기반암으로 하여, 주천강의 마식작용으로 생성된 포트홀(pothole)과 그루브(groove)가 다수 발달되어 있다. 조사지에서 관찰되는 포트홀은 대부분 지름과 깊이가 1m 이내이지만 가장 큰 포트홀은 지름이 1.5m에 깊이가 2m에 이른다. 마식에 의해 생성된 포트홀 내에는 마식에 관여한 자갈이나 모래들도 함께 마모되어, 하천변의 자갈보다 원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흑운모화강암에서는 다수의 절리세트도 관찰되며, 절리를 따라 포트홀의 형성이 규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절리방향으로는 다수의 포트홀이 연결되어, 하도의 형태를 보이는 그루브가 형성되기도 한다. 포트홀과 그루브가 발달한 흑운모화강암 내에는 약 50cm정도의 폭을 가진 반려암질 암맥이 관입되어 있으며, 주로 하천 바닥에서 북서-남동 방향의 자세로 관찰된다. 조사지에는 과거에 형성되었으나 수~수십 개의 포트홀이 순차적으로 발달함으로써, 서로 겹치거나 일부 파괴되어 지금은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구(舊)포트홀도 마식이 진행 중인 포트홀과 함께 나타난다.
- 요선암 포트홀에서는 유수와 하상 퇴적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포트홀의 형성 기작과 시기별 발달과정을 한 눈에 관찰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포트홀과 아름다운 하천 지형 경관이 잘 어우러져 있어 학술적 및 경관적으로 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포트홀은 ‘속이 깊고 둥근 항아리 구멍’이란 의미로 돌개구멍이라고도 하며 하천에 의해 운반되던 자갈 등이 오목한 하상의 기반암에 들어가 유수의 소용돌이와 함께 회전하면서 기반암을 마모시켜 발달하는 지형이다. 보통 하천의 상류지역에서 빠른 유속과 큰 에너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와지에 자갈이나 모래와 같은 퇴적물질이 들어가, 와동류(회오리가 이는 듯한 물살)에 의해서 반복적인 회전운동을 통해 포트홀 내벽을 침식, 점차 포트홀이 성장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내벽 및 하부침식이 일어나 커다란 항아리 모양으로 기반암을 파게 된다. 주로 사암이나 화강암과 같은 등질성의 단단한 암석에서 잘 발달하며, 형태로는 원형이나 타원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마. 검토의견 (*****)

-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은 제4기 홀로세 동안의 하천침식에 의한 지형발달 과정을 현장에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돌개구멍의 형태와 규모의 다양성, 뚜렷한 형태 등이 발달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존하고자 함
- 문화재 지정명칭에 대해서는 지정예고한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과 함께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영월 주천강 요선암 돌개구멍」의 3개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참고자료

(1) **** 의견

- ‘요선(邀仙)’이란 ‘신선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바위뿐 아니라 바위 주변을 통틀어 요선암이라고 부르는데 맑은 강속에 커다란 바위들이 넓게 깔려 있어 경치가 아주 뛰어나다. 요선암 주변에는 요선정(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1호) 및 마애여래좌상(강원도 유형문화재 74호)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요선암(포트홀)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기대

(2) 현지조사 의견('13. 1. 8)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안) :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주천강의 마식작용으로 화강암에 발달된 하식지형(돌개구멍)
- 연혁·유래 및 특징
 - 조선시대 문예가 봉래 양사언이 평창군수 시절, 이곳의 풍광을 즐기며 암반 위에 ‘요선암(邀仙岩)’이라고 새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옴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돌개구멍이 잘 발달되어 있음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영월군과 협의한 지정구역안 적용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무릉리 마애여래좌상(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4호)’와 ‘요선정(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1호)’이 있는 해발 약 295m 고지 일대는 보호구역 또는 현상변경허가기준 1구역에 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영월 10경 중의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므로 현장탐방 학습지역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함
 -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종합의견
 -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지형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함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안) : 영월 포트홀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하상에 발달한 하식 지형
- 연혁 유래 및 특징
 - 여러개의 포트홀이 복합적으로 발달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하천의 윤회와 유수에 의한 하식작용 등을 밝힐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가지며, 그 자체가 가지는 경관적 가치는 우수함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하천의 유로를 변경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하천의 상류 500m부터 하류 100m 지역과 하천 양안 100m를 포함하는 지역
 - 보호물 : 하천의 하상 전체
 - 보호구역 : 포트홀이 발달하는 하천 상류부 200m에서 포트홀이 발달하는 하천 하류부 끝단 50m 지점까지의 하천 지역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하천의 상류와 하류에 구조물의 설치, 준설, 유로의 변경, 토사의 유출 등은 회피되어야 함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포트홀은 하천의 침식작용이 중요하며, 하상이 사력으로 피복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하천의 유로, 유속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나 퇴적물의 이동을 교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종합의견
 - 천연기념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정 이후 철저한 관리를 요함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안) :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상기 지역은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를 북서-남동 방향으로 가로지르며 흐르는 감입곡류하천 성격의 주천강이 흐르는 지역으로, 이 곳 하상의 바위에는 “신선을 맞이하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는 요선암(邀仙岩)이라는 명칭이 붙여 있으며, 요선암 북서측에서는 북-남 방향으로 흐르는 법흥천이 합류한다.

- 요선암을 비롯하여 이 지역 서측에는 중생대 쥬라기의 제천화강암(흑운모 화강암)이 분포해있으며, 동측에는 주로 탄산염암으로 이루어진 하부고생대의 지층이 분포되어 있다.
- 요선암 일대의 하상을 이루는 흑운모화강암에는 국부적으로 중성 내지 염기성의 암맥이 발달되어 있다.
- 요선암 북서측의 하천변 야산 위에는 정자인 요선정(강원도문유형문화재자료 제41호)과 마애여래좌상(강원도 유형문화재74호)이 위치해 있다.

○ 연혁·유래 및 특징

- 지질시대 : 중생대 쥬라기/신생대 제4기
- 암질 : 흑운모화강암
- 이 지역에 발달한 하천은 산악지역에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감입곡류하천(incised meandering river)으로, 이 지역에는 자연제방이나 포인트바, 범람원 등 하천 주변 퇴적지형의 발달이 제한적이며, 이 지역 서측에 넓게 분포하는 쥬라기의 화강암반이 노출되어 있다.
- 돌개구멍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화강암반은 이 지역 하천의 동측변을 따라 길이 100여m, 폭 40여m의 규모로, 위에서 봤을 때 반달형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 암반의 북서측과 남동측, 그리고 맞은 편 하상에는 화강암반의 노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돌개구멍의 발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 이곳을 중심으로 수백m 구간의 유로는 대체적으로 저굴곡을 이루나, 돌개구멍 발달 암반 지역에서는 완만한 C자형의 유로가 형성되어 있다.
- 돌개구멍들은 대체적으로 이곳에 발달된 화강암의 절리방향(북동-남서) 또는 유로 방향(북서-남동)을 따라 다양한 형태(원형, 타원형, 장방형의 렌즈형, 불규칙형 등)와 크기(직경 수십 cm 내지 수 m 내외, 깊이 수십 cm 내지 1 m 내외)로 발달되어 있다.
- 일부 돌개구멍들의 내부에는 잔자갈 내지 중자갈들이 퇴적되어 있어, 유수가 넘쳐흐르게 될 경우, 이들 자갈들에 의한 마식작용에 의해 돌개구멍의 현재 상태의 형태와 크기가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하식기원 돌개구멍들이 화강암반 하상위에 폭 넓게 발달되어 있어, 제4기 홀로세 동안의 하천침식에 의한 지형발달과정을 현장에서 이해하는 데에 교과서적인 장소로,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중 ‘학술적 가치가 큰 침식 및 퇴적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자연지형’에 해당함

- 일반적으로 유수의 마식작용으로부터 기원하는 돌개구멍은 비교적 균질한 조적을 가지는 화강암이나 사암, 편마암 등의 암반이 하상에 노출되어 있을 때 형성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원의 돌개구멍은 전국의 여러 계곡과 하천에 드물지 않게 발달되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장소로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천과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 등을 들 수 있다.
- 이번 지정대상인 요선암 돌개구멍의 경우, 돌개구멍의 형태와 규모가 매우 다양함은 물론, 형태가 매우 뚜렷이 발달되어 있어 제 4기 홀로세 동안의 하천에 의한 침식과정과 이에 의한 특이 지형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에 교과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록으로 판단되어,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돌개구멍이 산재된 화강암반 노출지역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국내의 하상에 발달된 돌개구멍을 대상으로 한 천연기념물 지정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으로, 향후 이 지역 돌개구멍에 대한 지질지형학적 연구가 후속적으로 수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이 돌개구멍의 발달특성, 성인, 자연사적 가치 등을 설명하는 적절한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 우기 시에 발생하는 유수의 범람 이후, 돌개구멍 내부에 쓰레기 등 오물이 퇴적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제거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종합의견

- 상기 지역 돌개구멍의 형태적 특성과 규모를 함께 고려할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이 지역 지형기록의 자연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사. 문화재지정구역

○ 지정구역 토지조서 : 1필지 35,927.50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리자
				지적	지정면적		
1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1423	천	580,219	35,927.50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아. 참고자료(지정 예고기간 중 수렴의견)

<**** 의견>

-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주변에는 요선정(문화재자료 제41호) 및 마애여래좌상 (유형문화재 제74호)등 강원도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중첩되는 곳으로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많은 관광객들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한 관광지원으로 활용 기대
-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후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으며 향후 문화재로 지정되면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변 주차시설 및 화장실 확보 등이 절실히 요구 됨

자. 의결사항 : 원안가결(명칭을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으로 함)

2.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1423천
 - 지정일 : 2013. 4월(지정고시 예정)
- (3) 신청내용
 -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지형 보존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축·개축·보수 허용 ○ 신축 및 신규시설물 설치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등은 영향성 검토 ○ 기존 건축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 가능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선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구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건축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3.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등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등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무태장어서식지」,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난대림」
- (3) 신청내용 : 서귀포시 중문동 *****번지 외 14필지를 기존 1구역→2구역으로 조정
- (4) 조정사유 :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고려
- (5) 신청내역 : 중문관광단지 내 서귀포시 중문동 *****번지 외 14필지에 1층으로 시설되어 있는 제주 *****인 ‘*****’를 증축하여 관광사업 활성화를 기하고자 현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기존 규모 재·개축)으로 고시되어 있는 기준을 2구역으로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라. 검토의견(*****)

- 신청대상지는 주상절리대 지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지역을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설정하였으므로 2구역으로의 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관리단체 의견)

(1) ***** 의견(*****)

- 천제연 하구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무태장어서식지와 제378호 제주천제연난대림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이와 인접하여 동측(우측)에 위치한 ***** 소유의 토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기존 규모 내 재·개축에 한하여 가능토록 제한되어 있는 1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 이와는 반대로 천제연 하구를 벗어난 서측(좌측)지역은 4구역으로 설정 고시 되어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검토절차가 생략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이 조정을 요청한 토지 주변에 위치한 ICC제주 앵커호텔 조성사업과 관련 2013년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변경고시가 이루어져 부영호텔이 건립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2) *** 의견**

- “*****”의 증축공사 및 주변정비 계획은 동 구역 관리 보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3)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조정신청지역은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제443호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와 관련된 지역임.
- 조정신청지역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해안과 인접한 낮은 지대이며, 넓은 제1구역 중에서 신청지역만 제2구역으로 조정한다는 당위성이 부족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조정신청지역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인 해안과 인접한 낮은 지대는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으나, 2009년도와 최근에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초가건물이 있었음.
- 따라서 2009년도에 있었던 건물과 같게 건축한다고 했을 경우, 제1구역의 허가기준인 재축·개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서귀포시 의견인 재검토 요구는 부분적인 것임으로 형평성과 일관성을 고려한다면 천연기념물 지정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 중문 대포주상절리는 현무암이 냉각과정에 형성된 냉각절리로 지구진화과정의 한 과정을 보여주므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며, 해안에 노출되어 경관적 가치도 뛰어남이 인정되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자연유산적 가치가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에 연하여 최소한의 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인공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 이러한 목적으로 신청지역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해당 문화재를 보존하기위해 최소한의 필요조치로 판단되므로 허용기준의 변경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문화재위원>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신청이 접수된 지역의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무태장어서식지, 제378호 제주 천제연난대림, 제443호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지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다.
- 허용기준 조정을 요청한 지역은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폭 10 m 내외의 도로를 사이로 남서측의 자갈해빈에 연하여 있으며, 이 지역의 80 m 동측 및 남서측 해안은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의 지정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따라서 당초 고시된 1구역의 지정 근거가 된 자연적 조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임은 물론, 해당 지역이 자갈해빈과 연하여 있는 경관적 환경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지역을 대상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서 2구역으로 부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나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지정구역(추가지정)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구역(ㄱ)		소유자		
				지적	당초	변경	주소	성명
계					10,529	301,972		
공유수면	소계				7,305	273,530		
육지부	소계				3,224	28,442		
1	서귀동	70-1	대	1,669		1,669		서귀포시
2		70-2	대	957		957		서귀포시
3		70-4	답	457		457		제주특별자치도
4		93-7	도	13		13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	*****
5		93-9	도	626		250		제주특별자치도
6		93-10	답	22		22		제주특별자치도
7		93-11	답	142		142		제주특별자치도
8		93-12	답	46		46		제주특별자치도
9		93-14	답	1,325		1,325		제주특별자치도
10		93-19	대	5,497		5,497		제주특별자치도
11		94-1	임	2,291		2,291		제주특별자치도
12		94-2	도	33		33		서귀포시
13		98	답	2,126		2,126		제주특별자치도
14		100-2	대	2,825	551	2,274		제주특별자치도
15		102-3	대	1,226	566	660		제주특별자치도
16		962	구	18,446	290	78		국(국토해양부)
17	동홍동	233-2	답	50		50		제주특별자치도
18		234-1	임	79		79		제주특별자치도
19		234-2	대	727		727		제주특별자치도
20		234-6	대	387		387		제주특별자치도
21		234-7	임	1,018		1,018		제주특별자치도
22		234-8	대	1,071		1,071		제주특별자치도
23		263	답	407		407		제주특별자치도
24		264-1	답	590		590		제주특별자치도
25		269-1	답	614		614		서귀포시
26		270-1	대	1,339		1,339	서울 중구 ****	***
27		271-1	답	1,226		1,226		제주특별자치도
28		272-1	차	608		608		제주특별자치도
29		273-1	차	588		588		제주특별자치도
30		274-1	차	253		253		제주특별자치도
31		275	차	251		251		제주특별자치도
32		277	차	1,256		1,256		제주특별자치도
33	278	대	241	241		서귀포시	***	

							동흥동 *****	
34		296-7	도	713	713			국(국토해양부)
35		298-2	도	205	205			국(국토해양부)
36		298-3	답	119	119		서귀포시 서귀동 ***	***외7
37		299-2	도	50	50			국(국토해양부)
38		299-3	대	112	112			제주특별자치도
39		2175	구	979		37		국(건설부)
40		2180	구	942	230	61		국(국토해양부)
41		2181	구	179,287	147			국(국토해양부)
42	토평동	3255	구	238		40		국(건설부)
공유수면	공유수면 : 서귀동 70-1~ 토평동 475-2지선				7,305	273,530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건물신축 및 형질변경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건물신축 및 형질변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건물신축 및 형질변경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 7. 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건물신축 및 형질변경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
 - 사업내용
 - 토지형질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목변경내용	전용면적
***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 *****	답	400㎡	답→근생부지	330㎡

- 건물신축
 - 층고 : 지상 1층(4.8m)/ 대지면적 : 330㎡/연면적(건축면적) : 87㎡
- 사업기간 : 허가일 ~ '13.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1구역/허용기준 기존규모 재·개축)

라. 검토의견(*****)

- 동 사업 신청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에 음식점 부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허용기준상 기존 규모 재·개축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신청지는 기존 음식점 건물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 신축이 문화재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3.3.15)

< *** ** 문화재위원 >

본 사업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지정구역 인접지로 기존 음식점 건축물 사이에 위치하고 본 문화재인 낙동강호안과 20m 정도 이격 신축할 예정임. 따라서 이격거리의 공간에 차폐식식재를 한다면 도래하는 철새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6.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축도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교량공사용 축도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교량공사용 축도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번지)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 7.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교량공사용 축도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538번지
 - 사업내용 : 축도설치(공사용 임시 가도)
 - 길이(L) = 136m, 넓이(B) = 5m, 면적 : 680m²
 - 방법 : 흙쌓기
 - 사업기간 : 2013. 4.15~2014.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1구역, 허용기준 기존규모 재·개축)

라. 검토의견(*****)

-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관련 교량시공을 위한 임시 축도(가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이 허용기준상 1구역에 해당되나 공사 완료 후 철거할 계획이므로 문화재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 2009년 현상변경 허가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3.3.15)

<*** **문화재위원회>

본 사업은 고속국도 제104호선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의 조만강교 교량 시공을 위해 임시 축도를 만드는 것임. 그 주된 작업은 본 문화재인 조만강 하상에 흙 쌓기, 가마니 쌓기 이며 또 기존 고속도로 구간의 소음과 진동의 악화된 환경으로 철새도래 민감지역이 아님. 따라서 본 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악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7.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수목 식재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수목식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수목식재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 7. 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수목식재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09-1(을숙도 하단)
 - 사업내용
 - 면적 : A=3,056㎡(약923평, L=100m, B=30~40m)
 - 수종 및 수량 : 벗나무 등 5종 292주

수종	규격	수량	수종	규격	수량
벗나무	H1.5×R2	80	대추나무	H1.5×R2	90
감나무	H1.5×R2	45	산수유	H1.5×R2	32
자두나무	H1.5×R2	45			

- 사업기간 : 허가일 ~ '13. 5.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을숙도 내 쓰레기 매립장 온실가스 감소에 효과적인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감나무 등 목본류 식재가 철새의 주요 서식지인 을숙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따라서, 목본류보다는 초본류 식재를 검토·권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서면조사 의견 / '13.3.21)

< *** 문화재위원 >

을속도의 자연 문화재적 가치 및 특징은 철새도래지이다. 그 중 대부분이 강 하구를 서식기반으로 살아가는 섭금류 등 물새류의 월동지 및 번식지이다. 겨울철에는 다양한 오리 및 기러기류가 도래하여 겨울을 보내고 여름에는 강 하구의 사주나 모래톱 등에서 물떼새류(흰물떼새, 왕눈물떼새, 꼬마물떼새 등)들이 집단번식하고 수초가 우거진 곳에서는 물닭 및 쇠물닭 등이 번식하고 우거진 갈대숲에는 참새목조류(개개비, 개개비사촌,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이 번식하는 것이 전형적인 을속도 하구 단부(강 하구)의 조류생태계의 특징이다. 따라서 철새들을 위해서는 현재 을속도 하구 쓰레기 매립장은 목본의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하구의 철새를 위한 생태적 다양성을 위해 나출(裸出)된 모래밭(사주)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 곳에 나출된 자갈밭 및 모래밭을 조성해 준다면 물떼새류의 집단번식지가 조성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시적인 조정용 시험 조립장 보다는 강하구 물새 도래지로서의 바람직한 이용 계획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거친 후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8.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

가. 제안사항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 풍력발전단지 조성 신청 및 심의결과

구분	***** (주) (‘06.9월, ‘07.1월, ‘11.11월 신청)		(주)***** (‘09.3, 4월, ‘10.1월, ‘11.11월 신청)	
신청 내용	1차 (‘06.9)	20MW(2.0MW×10기), 높이80m	1차 (‘09.3)	100MW(2MW × 50기), 높이80m *천연보호구역내 40기
	2차 (‘07.1)	20MW(2.0MW×10기), 높이60m	2차 (‘09.4)	40MW(2MW × 20기), 높이80m *천연보호구역내 15기
	3차 (‘12.11)	16MW(2MW×8기), 높이 80m	3차 (‘10.1)	20MW(2MW × 10기), 높이70m
추진 경과	○ ‘06.10.25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 - 문화재구역내 생태 및 경관의 추가적 훼손이 우려됨 ○ ‘07.01.24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불허) - 생태적·경관적 훼손 우려됨 ○ ‘12.11.28 문화재위원회 심의(보류) - 신청기관이 2개이므로 양사간 협의 필요 - 협의를 될 경우 현지조사등을 통해 타당성 조사후 재검토		○ ‘09.3.25 문재위원회 심의(보류) ○ ‘09.4.15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 - 천연보호구역 내에서의 풍력발전시설 설치는 생태적, 경관적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등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다만, 천연보호구역 밖에서의 풍력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은 재검토 할 수 있는 사항임 - ‘10.1.27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 ○ ‘12.11.28 문화재위원회 심의(보류) - 신청기관이 2개이므로 양사간 협의 필요 - 협의를 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 조사 후 재검토 * ‘12.11.30 허가신청 철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주) (대표이사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46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강원 양구군 동면 일부, 인제군 서화면 일부 및 북면 일부
 - 지정일 : ‘73. 7. 10.

(3) 신청내용

- 사업명 : 풍력발전단지 조성
- 사업위치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산1
- 사업내용 : 풍력발전기 8기[16MW(2MW×8기)], 높이 80m, 날개 폭 91.3m
 - * 기존신청과 차이 : 설치수량(10기→8기)m, 규모(높이 60m→80m) 차이
 - * 지정구역 내 6기, 지정구역 밖 2기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외

라. 검토의견 (*****)

- '12년도 11차 위원회('12.11.28)에서 '양사간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될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 당초 신청한 2개 업체 중 (주)한국풍력에너지에서 허가신청을 철회('12.11.30)하였으며, 현지조사('13.3.21)를 실시한 바 있음
- 동 사항은 동일 신청인이 2006~2007년까지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총 2차례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모두 불허된 사항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마. 현지조사 의견('13.3.21)

- <**** 문화재위원>
 - 풍력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국가적으로 미래청정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 분명함
 - 그러나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은 특이한 기후조건으로 희귀한 동식물이 분포하고, 특히 식물생태학적, 식물분류학적, 지질지형학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존하고 있음.
 - 이 보존구역 내에 대형 풍력발전기의 설치는 이러한 학술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공구조물 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대형 인공구조물들의 설치가 전술한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가능한 회피하는 것이 국가 자연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으로 봄
- <*** 문화재전문위원/서면검토>
 - 신청지역은 독특한 분지상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 지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형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경관 측면에서도 지형경관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특히 경관 측면에서 볼 때 분지 아래쪽의 마을에서 보는 경관뿐만 아니라 분지 지형의 정상부에서 보는 경관 역시 동일하게 중시 되어야 하나 신청인은 분지 아래쪽 시야에서만 검토 하고 있음
- 본 지역에서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경관 영향은 양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하며, 제안서에서 한쪽 측면을 누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경우이든, 경관적 측면에서 발전기의 설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 또한 발전기 설치에 따른 대기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본 천연보호 구역 내의 독특한 분지 상 공간이 받는 생태적 변화 또한 발생 가능한 것이므로 풍력 발전기의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함

바. 의결사항 : 부결

9.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산림생태계 복원

가. 제안사항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 독도 천연보호구역 산림생태계 복원 추진경과
 - '11.4월 독도 천연보호구역 산림생태계 복원계획 보고(울릉군→문화재청)
 - '11.4.29 4차 문화재위원회 보고안건 상정
 -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이 수립되면 우리청 협의 후 시행
 - '12.10/'13.2월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사업 자문회의 참석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울릉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원
 - 지정일 : '82.11.1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사업
 - 사업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원
 - 사업내용
 - 3개 지역 820㎡, 사철나무 등 3종 7,380주 식재

연번	위치	면적(㎡)	본수(본)				비고
			소계	사철	섬괴불	보리밥	
1	정화조 주변	440	3,960	2,187	936	837	
2	경비대 주변	340	3,060	1,674	630	756	
3	해안포 주변	40	360	360	-	-	
합계		820	7,380	4,221	1,566	1,593	

- 무균처리 및 무균 포트묘 운반, 처리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2차 기본계획('11~'15년)」에 따라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 울릉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독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사철나무 등에서 종자 또는 삽수를 채취하여 독도 현지 여건과 비슷한 울릉도에 조성된 육묘장에서 증식된 수종을 독도 현지에 식재, 독도 산림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독도 고유 생육수종을 대상으로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독도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독도의 척박한 토양으로 식생정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식재방법, 대상지역 등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서면검토/*** 문화재위원)

- 독도는 희소한 지표토양, 강한 바람 등 특별한 생태환경으로 인해 목본식물의 활착 생육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지난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수차에 걸쳐 여러 기관 단체에서 7종 12,339주의 목본식물을 식재했으나 현재 활착 생육하고 있는 종류는 3종, 수 개체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독도에서의 식목 사업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사안이지만 그동안 단순한 행사목적의 식목행사가 빈번했고 그 결과는 대부분 독도의 지표환경만 악화시켰을 뿐 대부분이 고사됨으로써 독도 식생 복원 불가라는 실패감만 남기게 되었음
- 그러나 이번의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산림생태 복원 계획은 지금까지의 실패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토양 및 미생물 환경, 독도 식물의 유전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우려점을 최대한 고려한 계획이라고 판단되므로 금번 1회에 한해서 이를 허가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10.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내 연안정비 호안설치

가. 제안사항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내 연안정비를 위한 호안설치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내 연안정비 호안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외
 - 지정일 : '00. 7.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성산지구 연안정비 사업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일출봉 북측해안
 - 사업내용
 - 호안시설 : 자연석 호안 (L=167.0m, H= 2.0m~11.0m)
 - 표면녹화 : A= 1,480 m²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태풍 등으로 인해 침식이 발생된 구간과 기존의 침식방지시설(목책)이 파손되어 방치된 구간에 호안시설을 설치하여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나 전석쌓기 공법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의견)

- 현재 성산일출봉의 북측해안 비탈면은 침식이 진행 중에 있어 붕락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파랑등으로 부터 비탈면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침식방지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 연안침식으로부터 인명· 재산피해와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현재의 해안선을 유지· 보전함과 아울러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제고 등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상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 보류

11.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주변 건축물 증축

가. 제안사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주변 건축물 증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주변 건축물 증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산 1등
 - 지정일 : '00. 7.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건축물 증축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
 - 사업내용 : (기존)지상 1층 188.24㎡→(변경)지상 1층 226.90㎡(증축 38.66㎡)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1m
 - 허용기준 상 1구역에 해당 : 건축물 최고높이 6m 이하(1층 이하)
 - *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2011.8.17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39호)의 건축물에 관한 지침,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 지침, 지역별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증축(38.66㎡)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상 연면적 85㎡미만 부속시설 증축행위에 해당되어 자체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건축물의 경사지붕은 모임지붕, 박공지붕으로 제한하고 지붕 용마루는 ㄱ자, ㄷ자 등을 지양하여 一자형이 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지붕모양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의견)**

- 본 사업신청 대상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과 인접한 부지로서 마라도천연보호구역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39호, 2011.8.17)에 의하면 200㎡이하의 신축, 연면적 85㎡미만의 증축, 기존건축물 100㎡이하의 개(재)축에 한하여 지목상 대지인 경우 모임지붕, 박공지붕으로 계획시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금회 신청 내용은 기존 건축물에 이어서 증축함에 따라 형태에 있어서 향후 관리를 감안한 판단이 요구됨

바. 의결사항 : 부결

12.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주변 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210

○ 지정일 : '64. 1. 31.

(3) 신청내용

○ 사업명 : 소매점 신축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 *****

○ 사업내용 : 2층, 높이 6.5m, 건축면적/연면적 49.73㎡/80.76㎡, 철골조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1m

○ 허용기준 상 1구역에 해당 : 기존 규모 재축, 개축 허용

라. 검토의견(*****)

○ 신청부지는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기존 규모 범위 내 개축, 재축)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이며 지정구역과 바로 인접해있어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마. 참고자료(**** 의견)

○ 신청 사업부지는 편도 3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동북쪽 방향으로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하천과 접하고 있어 하천변 경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13.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건축물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건축물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
 - 지정일 : '93. 8. 1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
 - 사업내용 : 2층, 높이 9.2m, 건축면적/연면적 151.38m²/207.73m², 철근콘크리트조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1m
 - 허용기준 상 1구역에 해당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축, 개축 허용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기 전인 2009년도에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절차를 거쳐 서귀포시에서 건물신축 허가를 한 곳이나 건축주의 개인사정으로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다가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를 더 늘려 현상변경 허가를 재 신청한 사항임
- 신청부지는 현재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신청부지 주변으로 이미 2층 규모의 주택이 있어 문화재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됨

마. 현지조사 의견('13.3.11 * 문화재위원)**

- 건물의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서귀포시 색달동 2440-1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기존 규모 개축 또는 재축만 허용되는 곳이므로 건물의 신축은 허용되지 않는 지역임
- 그러나 이 지역과 천제연 난대림과의 사이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도로가 있고, 주변에 이미 2, 3층 규모의 건물들이 건립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색달동 *****토지 소유자의 사유 재산권 주장을 간과하기 어렵다고 하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상황임
- 더구나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서귀포시 색달동 *****은 한 필지의 토지를 양분한 것이라고 하므로 동일한 민원의 재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 지역의 허용기준을 1구역에서 2구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본 민원을 해소하고, 동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바. 참고자료(** 의견)**

- 본 사업은 당초 당해문화재와 관련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되기 이전인 2009. 11. 5일 문화재 주변영향여부 검토절차를 거쳐, 2011년 4월 11일 착공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건물(건축면적 156.66㎡, 연면적 98.91㎡, 건물높이 8.3m)이나, 금회 설계를 변경(건축면적 151.38㎡, 연면적 207.73㎡, 건물높이 9.2m)하고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14.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출지」 방문자센터 증축

가. 제안사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출지」 내 방문자센터 증축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출지」 내 방문자센터 증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 제1차 위원회(13.1.23) 시 보류된 사항으로 증축 위치 등을 변경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화성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출지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일원
 - 지정일 : 2000.03.2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센터 증축(편의시설) 공사
 -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방문자센터 내 관람객 편의시설 증축
 - 건축개요

구분	기존	증축	합계	비고
층수	지상2층	지상2층	지상2층	
연면적	966.48㎡	151.80㎡	1,118.28㎡	
용적률	27.61%	4.34%	31.95%	법정 60%
건축면적	572.85㎡	101.98㎡	674.83㎡	
건폐율	16.37%	2.91%	19.28%	법정 20%
건물높이	9.75m	-	9.75	
주차대수	29대		변경없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검토의견 (***)**

- 현지조사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계획안은 현재 건물의 층고를 유지하고, 현재 방문자센터 전면의 조망점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 의견**

-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센터 내에 편의시설이 없어 이용자의 원활한 공룡알 화석지의 견학 및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방문자센터 인근에 편의시설을 증축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및 관광자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현지조사 의견(2013.2.15)

<* 문화재위원>**

- 고정리 화석산지 방문자센터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천연기념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휴게시설 신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신축 건축물 설치(안)이 기존 방문자센터의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신청한 계획(안) 보다는 기존시설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 현재의 2층 시청각실과 배후의 연구실 일부, 테라스 공간을 편의시설로 개조하고, 이로 인하여 축소되는 연구실 등 공간을 현재 건물에서 주차장쪽으로 증축하여 보완하는 방법이 방문자센터의 기능과 휴게실의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안이라고 본다.

<* 문화재위원>**

- 휴게시설이 전면에 배치된 제시한 건축평면계획은 1층전시설 조망 및 탐방객의 동선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입면과도 조화되지 못하므로 2층부분 홀, 창고 등의 실을 휴게시설로 전용하고 기존 건축물 배면 좌측부분으로 홀, 창고 등 전용된 공간을 증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 방문자 센터 내 휴게공간 확보는 방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기존 건축물의 테라스공간과 연계한 별도 건축물 증축은 부지 내 유일한 랜드마크로써의 경관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이는 지속적인 방문자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 있어서, 근본적이기 보다는 임시적 대응책이라 할 수 있음.
- 방문자 센터 내 2층 일부공간을 휴게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고 이로 인해 축소되는 지원공간을 기존 건축물과 연계하여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인근의 유니버설스튜디오 조성에 따른 내외국인 방문객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자연유산관리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방문자 관리를 위한 시설과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15.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주변 주택 증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주변 주택 증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주변 주택 증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707번지 외
 - 지정일 : 1968.05.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주택 증축(1층→2층)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
 - 사업기간 : 2013.3월~2013.7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선으로부터 93m(허용기준 1구역)

라. 검토의견 (*****)

- 사업대상지는 허용기준 상 1구역(원지형 보존)이므로 지정문화재 주변 경관 등의 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현지조사 의견(2013.3.7)

<*** 문화재위원>

- 증축 신청지역은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 화석산지’와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의 현상변경 허가기준 제1구역(재축, 개축만 허용)에 해당함.
- 깊게 터파기를 하지 않는 한, 증축으로 인하여 서귀포층 패류 화석산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해당지역은 주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1구역의 폭을 약 150m로 넓게 설정하였음.
- 또한 해당지역 일대는 대부분 1층 건물이며, 증축을 허가한다면 현재의 1층 주택이 2층으로 증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상변경 허가기준에 위반되는 증축은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위원>

- 서귀포층은 신생대 해양동물의 화석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지구진화과

정을 연구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함화석층은 현재 해안에 노출되어 있으며 육지부로 연속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노두로부터 육지 쪽으로 일정구역을 포함하는 구역은 반드시 보존되어야하며, 특히 굴착 행위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신청대상 지역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현재 현상변경관리기준 1구역, 원형보존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구조물보다 더 큰 규모로 증축하고자하는 신청은 허용하기 어렵다.

<*** 문화재위원>

- 상기 지역은 신생대 신제3기의 해양패류화석을 다량으로 함유한 서귀포층이 육상으로 연장하여 분포하는 지역이다. 이와 함께 이 지역 남측 해안절벽의 북측 배후 일대가 주변 지역에 비해 높은 지형을 형성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해안조망이 뛰어난 것은 물론, 이 지역의 외곽부에서 이 지역으로 향한 조망 또한 뛰어난 경관을 이루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상기 지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다.
- 현재 이 지역의 남서측에는 특정 종교단체 소유의 5층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일대에는 1층 규모의 단독주택들이 다수 자리하고 있다.
- 신청 부지의 1층 건물에서 2층으로의 증축이 이 지역에 분포하는 서귀포층 퇴적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 지역의 경관 특히 동측부 지역에서 이곳으로 향한 조망 경관의 훼손에는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 일대에 대한 구역조정 전까지는,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증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지역의 자연경관 유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16.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주변 농로 개설

가. 제안사항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주변 농로 개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주변 농로 개설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삼척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25 외
 - 지정일 : 1966.06.14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신기면 주민숙원사업(대이리 농로 개설공사)
 - 사업위치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127번지 외 2필
 - 사업내용 : 농로포장(L=60.0m, B=3.0m), 석축찰쌍기(L=60.0m/H=0.3~0.25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 공사개요

공종	수량
토공	절토(토사) : 32.0 M3 / 성토(토사) : 11.0 M3 터파기(토사) : 90.0 M3 / 되메우기(토사) : 18.0 M3 잔토처리(토사) : 93.0 M3
석축공	석축찰쌍기(H=0.3~2.5m) L=60.0m, A=125.0 M2
포장공	콘크리트포장 (T=20cm) L=60.0m, V=37.0 M3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과도한 절토를 유발하지 않는 소규모 농로 개설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 농로 개설이 대이리 동굴지대 내에서 이미 알려진 동굴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현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농로개설이기 때문에 허가하여도 무방함.
- 그러나 공사 중 동굴이 발견될 시는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보고하여야 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17. 「서울 백악산 일원」 내 사방 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 백악산 일원」 내 계류정비 및 사면보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백악산 일원」 내 계류정비 및 사면보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종로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번지 일원 및 청운동 ***** 일원

○ 지정일 : 2009.12.09

(3) 신청내용

○ 사업명 : 「서울 백악산 일원」 내 계류정비 및 사면보수

○ 사업위치 : 청운동 ****, 평창동 ****, 평창동 ****, 명륜3가동 *****

○ 사업내용 :

- 청운동 ***(***) 계류정비

▷ 북측 계류정비

· 전석 콘크리트보막이 1개소 상장 20m

· 돌골막이 4개소 A형 상장 7.0m

· 돌바닥막이 3개소 B2.0m×H1.0m

· 전석 기슭막이 계류 양면 1식 H3.0m이하

· 침사지 가로3.0m×세로2.4m

· 목교 H1.338m×L7.91m

▷ 남측 계류정비

· 돌골막이 4개소 A형 상장 6.0m

· 우수맨홀 D450

- 평창동 **** : 전석 콘크리트보막이 1개소 상장 20.0m

- 평창동 ***** : 비탈면 다듬기후 낙석방지망 설치 3개소, 낙석방지책 설치 1개소, 잡목제거 등

- 명륜3가동 ***** : 기존 경계보안웬스 철거 및 재설치 3개소, 토사정지 작업 및 잡목제거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내에 **중인 **** **과 주변계곡의 안전을 위한 사방사업과 백악산 일원 내 도로변 암석절개로 인한 낙석방지 등 위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 **** 북측계곡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시에 토사유출과 침식이 우려되는 지형으로, 보막이, 골막이, 바닥막이 등의 공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단 기슭막이는 암반으로 이뤄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 측 가까운 성토사면부분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 **** 남측계곡 사방사업은 대부분 암석지로 안정되 계류를 형성하고 있으나, 하류부분에 1개소의 돌골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 사방사업 구조물은 명승 제67호 서울백악산 일원 명승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외형은 자연스러운 질감을 보일 수 있도록 시공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보완하여야함.
- 백악산 일원 내 도로 주변 낙석위험구간의 정비는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낙석방지망 설치 및 낙석방지 헨스 교체 등이 필요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 *** * 문화재위원)

- 신청 사업은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내에 **중인 **** 병영시설과 주변계곡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임.
- **** 북측계곡 사방사업
 - 호우 시에 토사유출과 침식이 우려되는 지형으로, 보막이, 골막이, 바닥막이 등의 공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기슭막이 공종은 계곡사면부가 대부분 안정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체구간을 대상으로 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병영시설에 직접영향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구간과 성토사면에 국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임.
- **** 남측계곡 사방사업
 - 남측계곡은 사면이 안정되어 있는 구간으로 하부지역에 1개소의 돌골막이를 시설하는 정도로 사방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사방사업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은 안전상 불가피한 시설이지만, 백악산의 명승경관을 훼손하는 요소임. 따라서 부지 아래로 나있는 도로위치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전면이 자연스러운 질감을 보일 수 있도록 시공하고, 또한 불량한 경관을 차폐할 수 있도록 조경식재로 보완하여야 할 것임.
- 백악산 일원 내 도로 주변 낙석위험구간의 정비는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낙석방지망 설치 및 낙석방지 헨스 교체 등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18.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농가주택 신축-(1)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농가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농가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서귀포 산방산」
 - 소재지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일원
 - 지정일 : 2011. 6. 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농가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번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내)
 - 사업내용 : 농가주택 신축
 - 1층 높이 5.9m,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101.61㎡, 연면적 74.52㎡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4. 2. 28일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라. 검토의견(*****)

- 산방산 허용기준 제1구역으로 재·개축만 가능한 지역으로 산방산과 인접하여 경관을 이루고 있어, 건축물 신축시 산방산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당해 사업 신청부지는 명승 제77호 제주서귀포산방산으로부터 약265m 이격된 곳이나 주변 지역에 건축물이 없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가능)으로 고시된 지역임.

바. 현지조사 의견('13.3.7)

<***·***·*** 문화재위원>

- 사업예정지는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기준 제1구역(개축 이외의 증축, 신축 불허)에 해당되는 지역임.
- 제1구역 내에서 증축이나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명승 산방산 주변의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신축은 불허되어야 함.
- 제1구역은 여러 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어 제1구역에 대한 자체 조례(또는 지침)를 만들어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주택 신청 예정 구역은 이러한 산방산의 자연경관 구성의 중요한 한 요소인 인접 수림지에 위치한다. 신청 지역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으로 원형보존이 산방산의 명승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설정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 특히 5.5m의 성토가 이루어지고 인공 구조물(주택)이 설치된다는 것은 문화재의 가치에 중요한 훼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산방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식생의 보존이라는 1구역 지정 당시의 목적을 유지하여, 이 지역에서의 주택 건축을 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의결사항 : 부결

19.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농가주택 신축-(2)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농가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농가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서귀포 산방산」
 - 소재지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일원
 - 지정일 : 2011. 6. 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농가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번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내)
 - 사업내용 : 농가주택 신축
 - 1층 높이 5.0m,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94.91㎡, 연면적 84.83㎡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4. 2. 28일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라. 검토의견(*****)

- 산방산 허용기준 제1구역으로 재·개축만 가능한 지역으로 산방산과 인접하여 경관을 이루고 있어, 건축물 신축시 산방산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당해 사업 신청부지는 명승 제77호 제주서귀포산방산으로부터 약110m 이격된 곳이나 주변 지역에 건축물이 없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가능)으로 고시된 지역임.

바. 현지조사 의견('13.3.7)

<***·***·*** 문화재위원>

- 사업예정지는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기준 제1구역(개축 이외의 증축, 신축 불허)에 해당되는 지역임.
- 제1구역 내에서 증축이나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명승 산방산 주변의 자연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신축은 불허되어야 함.
- 제1구역은 여러 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어 제1구역에 대한 자체 조례(또는 지침)를 만들어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주택 신청 예정 구역은 이러한 산방산의 자연경관 구성의 중요한 한 요소인 인접 수림지에 위치한다. 신청 지역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으로 원형보존이 산방산의 명승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설정되었다. 상기 지역은 산방산 서측의 완사면에 접하는 저평지역으로 현재 마늘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며, 이 지역을 포함한 배후지역은 자연지형과 식생이 보존되어 있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따라서 산방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식생의 보존이라는 1구역 지정 당시의 목적을 유지하여, 이 지역에서의 주택 건축을 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의결사항 : 부결

20. 「예천 초간정 원림」 주변 보건진료소 신축

가. 제안사항

「예천 초간정 원림」 주변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예천 초간정 원림」 주변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예천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51호 「예천 초간정 원림」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350번지 등 일원
 - 지정일 : 2008. 12. 2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예천 초간정 원림」 주변 보건진료소 신축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332-1, 332-2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내)
 - 사업내용 : 「예천 초간정 원림」 주변 보건진료소 신축
- 1층 높이 6.71m,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기와 건축면적 181.44m²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4. 2. 28일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라. 검토의견(*****)

- 「예천 초간정 원림」 주변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업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으로 전통형태의 가옥유지 및 경사지붕시 높이 7.5m이하로 신축 가능 지역임.
- 당초 지붕높이를 7.45m로 설계하였으나, 현상변경 현지조사시 초간정에서 조망할 때 높이 7.45m로 건축시 지붕이 보일 수 있으므로 지붕높이를 낮춰 축소하고 주변에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차폐토록 요구하여, 재차 설계 후 지붕높이를 6.71m로 낮춰 변경 신청한 바, 건축시 초간정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위치하며, 전통형태의 가옥유지 및 경사지붕 7.5m 이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바. 현지조사 의견('13.3.7)

<*** 문화재위원>

- 주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재 보건소는 건립이 된지 오래되어 규모와 시설이 노후화되고, 도로변에 위치하여 진출입시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현 보건소에서 약 20여m 정도 이격되어 있는 초간정 초입부에 단층 콘크리트구조의 전통양식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 건축양식은 초간정과 조화되는 전통양식이므로 주변경관에는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신청대지가 초간정 문화재지역으로부터 약 60m 정도 이격된 위치이며 초간정보다 다소 높아 초간정에서 볼 때 지붕부분이 조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물의 높이는 다소 축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물의 측면 폭을 축소하여 건물 전체 높이를 낮추고 전면부에 차폐식수(주변 수종과 동일한 소나무)를 하여 건물을 차폐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천기 2013-03-21

21.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지정구역 확대 조정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지정구역 조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지정구역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귀포시장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3) 신청내용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지정구역 확대 조정

(단위 : m²)

소재지	당 초			추 가			총 계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계	181	91,993,562	91,635,393	3	315,000	36,953	184	92,308,562	91,672,346
제 주 시	44	44,449,485	44,117,810	-	-	-	44	44,449,485	44,117,810
서귀포시	137	47,544,077	47,517,583	3	315,000	36,953	140	47,859,077	47,554,536

○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내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소 유 자	비고	
				지적면적	지정구역			
합계	서귀포시	3필지		315,000	36,953			
1	상호동	산85-3	임	292,587	(도) 492 (임)14,048	서울 성동구 행당동 **	**** **재단	공고후 분할
2	상호동	산86-1	천	17,237	17,237	국(산림청)	산림청	
3	상호동	산86-18	임	5,176	5,176	국(산림청)	산림청	

라. 검토의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하천 주변의 생태, 경관보존 및 천연기념물 제191호인 제주 한란 보존을 위해 지정구역으로 편입하여 보존·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현지조사 의견

(‘12.3.11/**** 문화재위원, *** ** 문화재**위원)

- 신청지역은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191호인 제주 한란이 자생하는 등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하천 주변 생태환경보호와 경관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문화재 지정구역으로포함시켜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참고사항(** 의견)**

- 훼손되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하천 주변 생태적 환경 조성과 경관의 효율적 보존, 그리고 하천변에 자생하는 한란과 주변의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가 필요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22.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지정구역 확대 조정 및 도면 정정

가. 제안사항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지정구역 확대 조정 및 지형도면 정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지정구역 확대 조정 및 지형도면 정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주요 경과
 - 2003.3.4 천연기념물 지정(전남기념물→천연기념물 승격)
 - 2007.8.13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변경
 - 2007.8.30 미등록 도서 및 비정위치 도서 일제정비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산348번지)
 - 2007.9.7 미등록 도서 및 비정위치 도서 일제정비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목도)
 - 2008.6.10 미등록 도서 및 비정위치 도서 일제정비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중도)
 - 2013.2.15 위치정정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요청(여수시→문화재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및 퇴적층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115-2번지 외
 - 지정일 : 2003.3.4
- (3) 지정구역 확대 조정 및 지형도면 정정 사유
 - 국토해양부와 전라남도 주관으로 2006~2007년 실시한 ‘미등록 도서 및 비정위치 도서 일제정비사업’ 결과 여수시 소재 섬 지적이 일부 정리됨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지정구역에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일부 번지 신규편입 및 지형도면 조정을 신청한 사항임
- (4) 지정구역 조정 : 1필지 1,222㎡ 신규 편입
 - 미등록 도서 및 비정위치 도서 일제정비사업 결과 현재 지정구역인 목도와 연결한 1필지를 지정구역으로 신규 편입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공부 정리일자	비고
					주소	성명		
1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 348	임	1,222		국(산림청)	2007.8.30	목도 옆 돌섬

(5) 지형도면 정정

- 지적 일체정비 결과 지형도면 상 지정구역의 위치가 변동된 2필지에 대한 지형도면 정정
- 위치정정 토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공부 정리일자	비고
					주소	성명		
1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 92	임	1,983	화정 낭도 1010	낭도리 ****	2007.9.7	목도
2		산 344	임	7,239	화정 낭도 198-1	화정면사도 리****	2008.6.10	중도

라. 검토의견(*****)

- 신규 편입대상 지역은 기 지정된 목도와 동일한 지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정구역으로 추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상기 천연기념물은 백악기 공룡발자국과 이를 함유한 퇴적층이 발달되어 있는 여수시 화정면 낭도, 목도, 사도, 중도, 추도 등의 육상 및 해안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구역이 고시되어 있음
- 이 지역의 ‘미등록 도서 및 비정위치 도서 일체정비사업’을 통해 중도 지역의 일부와 고시 당시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에 해당되지 않았던 목도 동측 10m 부근의 작은 돌섬이 지적공부상에서 지적이 변경되었음
- 중도 지역의 경우 공룡발자국이 산출되는 퇴적층과 나무화석이 산출되는 응회암층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음은 물론, 뛰어난 지형경관을 이루고 있음으로, 위치가 정정된 지역 또한 지정구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목도 동측 돌섬의 경우, 공룡발자국이 산출되는 목도 지역의 하부퇴적층이 연장하여 분포되어 있음으로, 이 지역 또한 지정구역에 추가시켜야 할 것임
- 한편 낭도리 화석산지의 하나인 중도의 북동측에 위치한 장사도와 중도 사이의 공유수면과 장사도 일부 지역에서 난개발에 의한 훼손이 우려되고 있음으로, 낭도리 화석산지의 주변 자연경관과 지질자원의 보존 측면에서 이들 지역을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원지형을 보존해야 할 것임

<** 교수>

- 소재지 위치: 목도 섬과 연장선상에 있음(거의 붙어 있음)
- 구성암석: 백악기퇴적암류(셰일과 사암의 호층대)와 상부에 화산암으로 구성 추정, 이는 주변 목도와 낭도에 분포하는 퇴적층의 연장으로 여겨짐
- 화석 유무: 접근이 곤란한 소규모 무인도라 정밀 조사가 어려우나 인근 목도에서 공룡발자국화석들이 산출되어 화석 발견 가능성 배제 못 함.
- 상기 의견을 종합하여 지정구역에 편입토록 요구함

<*** **연구관>

- 목도 앞의 작은 돌섬도 문화재구역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음.
- 태풍 및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문화재안내판이 멸실과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요구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보고사항】

천기 2013-03-23

23.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16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 도래지	○ 문화재명 : 천기 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낙동강사업본부장 ○ 허가내용 : 물억새 식재 - 면 적 : A=20,000㎡(L=5,000m, B=4.0m) - 위 치 : 을숙도 하단부 산책로변 - 식재규모 : 320,000본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제324-6호 소쩍새 제324-7호 큰소쩍새	○ 신 청 자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장 ○ 허가사항 : 관람 전시 및 학습자료 활용 (구조.치료후 재활이 불가능한 개체) ○ 허가기간 : 2013. 3. 4. ~ 2018. 3. 3. ○ 개 체 수 - 제243-1호 독수리 2마리 - 제324-6호 소쩍새 1마리 - 제324-7호 큰소쩍새 1마리	<허가>
	천연기념물 제200호 먹황새 제201-2호 큰고니 제323-1호 참매 제324-2호 수리부엉이 제324-5호 첩부엉이	○ 신 청 자 : 환경부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장 ○ 허가사항 : 관람 전시 및 학습자료 활용 (구조.치료후 재활이 불가능한 개체) ○ 허가기간 : 2013. 3. 14. ~ 2018. 3. 13. ○ 개 체 수 - 제200호 먹황새 1마리 - 제201-2호 큰고니 1마리 - 제323-1호 참매 1마리 - 제324-2호 수리부엉이 1마리 - 제324-5호 첩부엉이 1마리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 제450호 빨쇠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전라남도 신안군청 ○ 허가사항 : 포획(가락지부착 및 혈액샘플 채취) (철새의 번식지 이동경로 파악 및 서식지 이용현황 파악) ○ 허가기간 : 2013. 3. 19. ~ 2013. 5. 31. ○ 개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 20개체 - 제450호 빨쇠오리 20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4호 흰꼬리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기념물 제243-4호 흰꼬리수리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 주지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 부속채 개축 -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 - 사업내용 : 기존 보일러실(1동, 27.95㎡) 및 오수처리실(1동, 25.42㎡) 철거 후 부속채 개축(1동, 39.78㎡)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3.10.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인증서 조형물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973 - 사업내용 : 정주석 3개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3. 6.30. 	<허가>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서귀포시장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라도 휴게소 용도변경 · (당초) 제1종 근린생활시설(종합휴게실) → (변경) 소매점, 휴게실 - 사업내용 : 상수도관(D15mm) 부설(L=25m)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3.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주)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이동통신기지국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2 해안동 산***** - 사업내용 : 기존 노후된 기지국 철거 후 재설치 3개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4.2.28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00호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김천시장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주변 섬계서원 보수사업 - 사업위치 : 경북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산51번지 - 사업내용 : 섬계서원 담장 설치 및 석축보수 등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3.12.31 	<허가>
	명승 제66호 두륜산 대홍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해남군수 ○ 사업명 : 대홍사 일원 환경정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전남 해남군 삼산면 산8-1 - 사업내용 : 태풍 블라벤 피해 탐방로 및 수목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제거 : 넘어진 수목 삼나무 등 외래수종 11주 및 잡목 제거 1식 · 바닥정비 : 대홍사 진입로 토사유실지역 마사토 및 잡석 깔기 2,318㎡ · 배수로 정비 : 토사유실 방지용 U형 배수로 설치 145.7M · 도로포장 : 아스콘 포장 12㎡ · 가로등설치 : 대홍사 진입로 가로등설치 L=1,200m. 총 35개소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 6. 30일까지 	<허가>
	명승 제28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삼척시장 ○ 사업명 : 삼척 죽서루 주변 유적 정밀발굴조사(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8-2번지 및 23-2번지 - 사업내용 : 죽서루 주변 유적 정밀발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면적 : 3,874㎡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 12. 31일까지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에 관한 사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표조사 와 발굴허가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거쳐 시행 - 발굴조사 완료후 수목 등 원상복구 	<허가>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공주시장 ○ 사업명 : 공주 한옥마을 내 개별형 숙박동(1차분) 건립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공주시 웅진동 325-11번지 - 사업내용 : 한옥 5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연면적 170.46㎡ · 한식목구조, 기와 및 초가지붕 / 지상 1층 높이 5.32m, 기와지붕형(A형) 1동 면적 33.93㎡, 초가지붕형(A형) 1동 면적 33.93㎡ / 기와지붕형(B형) 2동 면적 34.20㎡, 초가지붕형(B형) 1동 면적 34.20㎡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 12. 31일까지 																
	명승 제35호 성락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국립문화재연구소장(자연문화재연구실) ○ 사업명 : 성락원 원형복원을 위한 전통공간 조성기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 - 사업내용 : 성락원 원형복원을 위한 학술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락원의 정원구성요소 실측 및 현황조사 · 성락원의 조성기법 및 변화과정 구명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 분석 · 성락원의 보존·관리 및 원형복원을 위한 학술자료 구축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12.31일까지 	<허가>															
허가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435호 달성비슬산 암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대한불교***** ○ 신청내용 : 대건사 증창 ○ 사업위치 :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1 ○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대웅전 등 건물 5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웅전, 관음각, 회전문, 선당, 화장실 · 건축면적 : 268.56㎡ - 변경 : 건물수 및 건축면적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5동→4동(대웅전, 산신각, 선당, 종무소 및 요사채) · 건축면적 : 268.56㎡→181.62㎡ 	<허가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한국***공사 ○ 신청내용 : 시화호 퇴적토 처리공사(퇴적토 준설, 호안축조, 생태공간 조성) ○ 사업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남측 시화호 공유수면 ○ 허가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당초</th> <th>변경</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호안길이</td> <td>1,320m</td> <td>920m</td> <td>감 400m</td> </tr> <tr> <td>준설면적</td> <td>66,500㎡</td> <td>125,000㎡</td> <td>증 58,500㎡</td> </tr> <tr> <td>매립면적</td> <td>113,000㎡</td> <td>67,000㎡</td> <td>감 46,000㎡</td> </tr> </tbody> </table>	구분	당초	변경	비고	호안길이	1,320m	920m	감 400m	준설면적	66,500㎡	125,000㎡	증 58,500㎡	매립면적	113,000㎡	67,000㎡	감 46,000㎡
구분	당초	변경	비고															
호안길이	1,320m	920m	감 400m															
준설면적	66,500㎡	125,000㎡	증 58,500㎡															
매립면적	113,000㎡	67,000㎡	감 46,000㎡															

나. 의결사항 : 원안접수